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0-130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택시운송사업 지원 정책(감염병 예방 등의 물품지원)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, 구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, 정의, 지원대상(안 제1조 ~ 제3조)

-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, 정의, 지원대상 규정

나. 지원사업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·운영(안 제4조 ~ 제6조)

- 지원사업 및 구민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규정

다. 표창 및 시행규칙(안 제7조 ~ 제8조)

-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한 성과가 있는 경우 표창 수여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8. 20. ~ 2020. 9. 9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제1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: 수정의결(2020. 10. 6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 다목·라목 및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일반택시 또는 개인택시에 대하여 지원한다.

**제4조(지원사업)**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감염병 예방,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물품 지원
2. 택시운수종사자 의복 지급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교육 및 홍보)** ① 구청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친절·청결, 복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올바른 택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**제6조(협력체계 구축·운영)** 구청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, 구민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7조(표창)** 구청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기여한 성과가 현저한 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4조(지원사업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1. 감염병 예방,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물품 지원
  2. 택시운수종사자 의복 지급
  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.

## 4. 작성자 : 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고장훈 (☎ 3153-9683)